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43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화평법")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, 유독물질의 지정기준(화평법 시행령 별표 1)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11종 물질을 고유번호 "2024-1-1213"라부터 "2024-1-1223"라까지 신설
  - 급성경구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가목'): 2024-1-1214, 2024-1-1219, 2024-1-1223
- 급성흡입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다목'): 2024-1-1213, 2024-1-1215, 2024-1-1216, 2024-1-1221, 2024-1-1222
- 피부 부식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라목'): 2024-1-1217, 2024-1-1218, 2024-1-1220
  - ※세부적인 결과값은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고시 참조
- 나.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CAS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고유번호 "2017-1-762"란, "2022-1-1095"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
-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
- 다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)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(수입신고 및 영업허가, 유해화학물질의 표시, 취급기준 등)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화학물질등록평가팀, 전화 032-560-7139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www.nics.me.go.kr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 - 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17호, 2024. 04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

##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"2017-1-762"란 및 "2022-1-1095"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고유번호 "2024-1-1212"란 다음에 "2024-1-1213"란부터 "2024-1-1223"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17-1-762	리모넨[ <u>Limonene</u> ; 5989-27-5, 138-86-3, <u><b>5989-54-8</b></u> ] 및 이를
	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095	(±)-노르니코틴[(±)-Nornicotine; 5746-86-1, <u>494-97-3</u> ] 및 이를
	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3	트리플루오르화 인[Phosphorus trifluoride; 7783-55-3] 및
	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4	클로로포름산 2-프로핀일[2-Propynyl chloroformate;
	35718-08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5	1,4-디이소시아나토벤젠[1,4-Diisocyanatobenzene; 104-49-4]
	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6	무수아세트산[Acetic anhydride; 108-24-7] 및 이를 25% 이상
	함유한 혼합물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24-1-1217	염화 알루미늄[Aluminium trichloride; 7446-70-0] 및 이를
	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8	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[Aluminium sodium dioxide;
	1302-42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9	1,3-디페닐구아니딘[1,3-Diphenylguanidine; 102-06-7] 및 이를
	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0	디이소프로필아민[N-(1-Methylethyl)-2-propanamine;
	Diisopropylamine; DIPA; 108-18-9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1	염화 시아누르산[Cyanuric chloride; 108-77-0] 및 이를 1%
	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2	황화 카르보닐[Carbonyl sulfide; 463-58-1] 및 이를 25% 이상
	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3	수산화 리튬[Lithium hydroxide; 1310-65-2] 및 이를 25%
	이상 함유한 혼합물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: 2025년 1월 1일
- 2.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: 2025년 1월 1일
- 3.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: 2025년 1월 1일
- 4.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: 2026년 7월 1일
- 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2026년 7월 1일
- 6.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: 2025년 7월 1일
- 7.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: 2028년 7월 1일